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22

제안연월일: 2024. 9. 5.

제 안 자:이개호·이기헌·김현정

이정문 · 김영배 · 박수현

정진욱 • 이언주 • 위성곤

어기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.

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,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 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 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범죄 처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(경기·공연장 등의 방해) 경기장, 공연장, 흥행장 그 밖에 정하 여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생	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
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			
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			
으로 처벌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5. (경기・공연장 등의 방해)		
	경기장, 공연장, 흥행장 그		
	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		
	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		
	<u>방해하는 사람</u>		